《증치세법 실시조례》 공식 의견 수렴 개시, 제반 중점사항 주목 필요

2025.8
Issue 10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1](이하 "《증치세법》")이 2024 년 12 월 공식 발표되어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증치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의 2025 년도 입법 업무 계획에 따라 재정부는 세무총국과 함께 2025 년 8 월 11 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실시조례(의견수렴본)》[2](이하 "《실시조례 의견수렴본》")를 발표하여 사회대중으로부터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조례 의견수렴본》에 대해 PwC 는 즉시 연구를 진행하여 이것과 현행 증치세 정책 간 차이점을 초기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아무쪼록 기업이 《실시조례 의견수렴본》의 내용을 한층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PwC 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피드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건의사항을 요약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함으로써 증치세 법적 체계의 구축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이번 《실시조례 의견수렴본》은 현행 증치세 정책과 비교할 때 일정한 차이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점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칙

一、"경내 소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증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경내에서 발생한 과세거래란 판매하는 "서비스, 무형자산이 경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자가 경내 단위와 개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4 조에서는 "경내 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경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는 제외. (2)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판매하는 서비스, 무형자산으로서 경내의 화물,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3)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

현행 증치세 정책에 따르면, 경내에서 판매하는 서비스와 무형자산이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경내에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전적으로 경외에서 발생한 서비스 또는 전적으로 경외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은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실시조례 의견수렴본》의 경우, 제 4 조 제(1)항을《증치세법》과 결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현행 증치세 정책과 일치합니다. 제(2)항을 추가한 것은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경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내의 화물,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할 때 중국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주관적인 판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논란이 크다는 점입니다.

세율

二、"완전 경외 소비"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

《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9 조에서, 수출 서비스 및 무형자산 영세율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현행 증치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실시조례 의견수렴본》에서는 "완전 경외 소비"의 개념에 대해 여전히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경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을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에 관한 통지》[3](재세[2016]36 호) 부록 4 에 따르면, 경외 단위에 전적으로 경외에서 소비되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실시조례 의견수렴본》에서는 관련 혜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완전 경외 소비"의 개념과 증치세 면제의 규정이 향후 발표될 보충 재세 정책 문건에서 명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실시조례 의견수렴본》에서는 "경내 소비"를 "판매하는 서비스, 무형자산으로서 경내의 화물,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이를 "완전 경외 소비"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때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三、"혼합 판매" 적용 경우를 명확히 하였음

《증치세법》에서는 "납세자에게 발생한 하나의 과세거래가 둘 이상의 세율, 징수율과 관련된 경우, 과세거래의 주요 업무에 따라 세율, 징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10 조에서는 "업무 간에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의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된 업무는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며, 거래의 실질과 목적을 반영한다. 부수적인 업무는 주된 업무의 필수적인 보완이며, 주된 업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한층 더 제한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발생한 과세거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의 과세거래 발생"에 속하지 않으며, "겸영"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과세거래별로 매출액을 각각 구분 처리해야 하며, 만약 각각 구분 처리할 수 없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

四、간이과세방법에 따른 환급 메커니즘 제시

현행 증치세 정책에 따르면,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하는 경우, 판매 할인, 중단 또는 반품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환급되는 매출액은 당기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당기 매출액에서 차감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과다납부세액은 이후 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14 조에서는 상술한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를 받거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간이과세방법에 따른 환급 메커니즘을 명확히 했으며,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五、대출 서비스 매입은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 불가 범위에 해당

《증치세법》 제 22 조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범위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대출 서비스가 빠져 있어《증치세법》 발표 당시 일정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번《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20 조에서는 "납세자가 대출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출자에게 지급한 대출과 직접 관련된 투/융자 고문 비용, 수수료, 자문 비용 등 비용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으며, 이는 현행 증치세 정책과 일치합니다.

六、"비과세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현행 증치세 정책에 따르면, "비과세"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22 조에서는 "납세자가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구매하여 **《증치세법》 제 6 조 이외의 비과세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26 조 "5 가지 공제 불가 항목"과 결합하여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거래"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예: 일반적으로 주식이익,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 등이 있음), 관련 납세자는 "비과세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빨리 정리하고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七、구분 불가 매입세액의 전출 시 연도별로 정산 및 조정 필요

"일반납세자가 화물(고정자산 제외), 서비스를 구매하여 간이과세방법 하의 과세 항목과 증치세 비과세 항목에 사용하였으나 공제불가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에 대해서, 현행 증치세 정책과《실시조례 의견수렴본》에서는 모두 매출액 비율에 따라 "당기 공제불가매입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증치세 정책에서는 "주관세무기관이 상기 공식에 따라 연도별 데이터에 근거하여 공제불가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와는 달리,《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23 조에서는 "납세자는 상기 공식에 따라 매 기간별로 공제불가매입세액을 계산한 다음, 익년 1 월 납세신고기간 내에 연간 취합된 데이터에 따라 정산 및 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불가매입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신고 및 규정 준수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기업은 후속 연간 정산 조정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세칙이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증치세법》 발효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소급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한지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八、"장기자산"의 개념 제시, 매입세액 처리 조정

《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26 조에서는 "고정자산,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포함한 "장기자산"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취득한 장기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1) 5 가지 공제불가항목(간이과세방법 하의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비과세거래**, 단체복지 또는 개인소비)에 전용되면 공제 불가. (2) 일반과세방법 하의 과세항목과 공제불가 항목(이하 "혼합 용도"라 함)에 겸용: **취득원가 500 만 위안 미만의 단일 장기자산은 전액 공제될 수 있으며, 취득원가 500 만 위안 이상의 단일 장기자산은 구매 시 먼저 전액 공제받은 후 혼합 용도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연수 또는 상각연수에 따라 공제불가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연도별로 조정함**.

《실시조례 의견수렴본》은 현행 증치세 정책에 따른 고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에 대해서 대폭 변경을 가하였습니다. 겸용되는 장기자산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장기자산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습니다. 만약 기업이 겸용 목적으로 취득원가 500 만 위안 이상의 단일 장기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더이상 전액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행 증치세 정책에서는 "임차한" 고정자산, 부동산을 일반과세방법 하의 과세항목과 공제불가항목에 겸용하는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실시조례 의견수렴본》에서는 "구매"가 아닌 "취득"이라는 표현을 채택했으므로, 임차와 같은 여러 가지 취득 방식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우대혜택

九、미용의료기관은 면세 적용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현행 증치세 정책에 따르면, 면세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이란 주관 부문의 문건 규정에 따라 등록 후《의료기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의료기관 및 군대, 무장경찰부대 소속 각 급 의료기관을 말하므로,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미용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도 면세 범위에 속합니다.《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28 조에서는 미용의료기관에 대해서 더이상 증치세 면세 정책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十、세수우대혜택 적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 시 세액을 추징함을 명확히 하였음

《실시조례 의견수렴본》 제 35 조에서는 다음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납세자가 증치세 우대혜택 항목의 매출액, 매입세액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제반 규정 위반 수단을 통해 증치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수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증치세 혜택을 이미 적용받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혜택 적용 불가 기간의 관련 세금을 회수한다. 탈세의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해당 조항은 납세자가 증치세 세수우대혜택을 적용할 때 혜택 항목의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규정 위반 또는 합법적이지 않은 상황이 없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아가 세수우대혜택이 적격 납세자에게 정확히 적용되도록 하고 세수우대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상술한 규정 위반 방식을 통해 증치세 우대혜택을 적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세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수 메커니즘이《세수징수관리법》상의 3 년, 5 년 추징 기한(탈세가 아닌 경우)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께서는 과거 실무 사례 중 유사한 세무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세무 위험을 방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징수 관리

十一、소규모납세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기에 일반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함

현행 증치세 정책은 소규모납세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하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는데, 실무상 통상적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익월부터 시작하여 일반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합니다.《실시조례 의견수렴본》제 38 조에서는 소규모납세자가 기준을 초과한 **당기**부터 일반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는데, "규정 기준을 초과했지만 과세 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사업자는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에 따라 납세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소규모납세자의 정책은 보다 엄격하고 철저해질 수 있습니다.

十二、세액 예납 범위 통합

《실시조례 의견수렴본》제 48 조는 현행 증치세 정책하의 상이한 문건들에서 규정한 세액을 예납해야 하는 범위를 통합했습니다. 현행 세액 예납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는데, 세액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제공하는 건축 서비스, 선수금 방식으로 제공하는 건축 서비스, 사전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타지역 부동산의 양도 및 임대, 석유/가스 기업이 타지역에서 판매하는 원유/천연가스 생산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현행 증치세 정책하의 "자체 개발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선수금 방식 판매"가《실시조례 의견수렴본》에서는 "사전 판매 방식의 부동산 프로젝트 판매"로 조정되어, 관련 세액 예납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十三、수출 환급(면제)의 최종 신고기한 설정

《실시조례 의견수렴본》제 51, 52 조에서는 "수출신고일로부터 36 개월 이내에 증치세 환급(면제)/비과세를 신고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 경내로 화물/서비스/무형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새로 추가했고, 수출 증치세 환급(면제)/비과세 신고에 대한 **최종 신고기한**을 설정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징수관리의 차원에서 해당 화물/서비스/무형자산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면제)/비과세 정책을 계속 적용할 권리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행 증치세 정책하의 다음 규정이 본 조항으로 대체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화물용역을 수출하여 발생한 국경간 과세행위에 대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 환급(면제)를 신고하지 않거나《화물수출대행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 환급(면제) 증빙 및 관련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대로 수출 환급(면제)를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다. 규정 기한 내에 외환을 회수하지 않거나 외환회수불가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외환을 회수하거나 외환회수불가 수속을 처리하는 대로 세금 환급(면제)를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다." 향후 36 개월이라는 마감 기한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여 기업에 기한 연장 신청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국가세무총국의 기한 경과 미신고 수출 환급(면제) 관련 신고 연장 허용에 관한 공고》[4](국가세무총국 공고[2015]44 호)(문건 이미 폐지됨)에서는 신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일부 경우를 규정했으며, 여기에는 자연 재해, 사회적 긴급 상황 등 불가항력적 요인, 매매 양 당사자가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수출 환급(면제) 신고 증빙을 제때 취득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수출화물통관신고를 수정하는 신청을 해관에 제출했는데 세금 환급(면제) 기한 만료일까지 해관에서 수정을 완료하지 않아 기한 내에 수출화물통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十四、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 새로 추가

《실시조례 의견수렴본》제 56 조에서는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납세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결여된 계획/거래를 실행하여 증치세 납부세액을 감소, 면제, 지연납부를 하거나 증치세 환급세액을 증가 또는 사전 수취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증치세법》제 20 조 및《실시조례 의견수렴본》제 18 조에는 납세자의 매출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계 조항이 이미 있으나, 실무상 복잡한 조세회피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한편,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은 보충 조항으로서, 기타 합리적인 상업적 이유가 없는 계획/거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조정"은 "매출액

추계"라는 조정수단보다 훨씬 광범위하므로, 세무기관과 납세자는 상업적 목적, 조세회피 목적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5 년 3 월에 발표된《세수징수관리법(의견수렴 수정본)》에서도 해당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일반 조세회피방지를 세수 입법에 포괄시킨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업은 증치세 관련 거래에 대해서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잘 고려함으로써 세무기관에 의한 조정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점

《증치세법 실시조례(의견수렴본)》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5 년 9 월 10 일**입니다. 사회대중은 재정부 웹사이트 접속 및 우편의 방식을 통해《실시조례 의견수렴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PwC 의 세무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Newsflash 는 의견수렴본에 대한 초기적인 분석이며, PwC 는《증치세법 실시조례》의 발표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관찰을 적시에 공유할 것입니다.

주석

1.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237365/content.html

   《증치세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PwC Newsflash 2024 년 Issue 19 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4/chinatax-news-dec2024-19.pdf

2.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실시조례(의견수렴본)》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356/n810961/c5242227/content.html

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6]36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3752/content.html

4. 《국가세무총국의 기한 경과 미신고 수출 환급(면제) 관련 신고 연장 허용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5]44 호)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65/n1465977/201507/c1813169/content.html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5 年 8 月 12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5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